

2022년 「테스트베드 세종 혁신기술 실증지원사업」 창업기업 모집공고

세종시 신 산업분야 유망 혁신기술(서비스)을 발굴하기 위한 『테스트베드 세종 혁신기술 실증지원사업』에 함께 할 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.

스마트시티, 통합모빌리티, 바이오헬스케어, 실감형콘텐츠, 스마트그린 분야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창업벤처의 실증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2년 06월 02일
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

1

사업 개요

□ 사업목적

- 혁신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성능, 사업성, 고객검증 등의 실증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기술 고도화 및 조기 사업화 지원

□ 지원대상 및 규모

- (지원대상) 세종시 신 산업분야(스마트시티, 통합모빌리티, 바이오헬스케어, 실감형콘텐츠, 스마트그린)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기업
- (지원규모) 총 3개사, 기업당 최대 20,000천원

2

지원 내용

□ (지원내용) 3개사 실증 사업화 자금(기업당 최대 20,000천원)

- 세종시 신 산업분야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벤처의 제품·서비스 실증을 위한 기술사업화(시제품제작, 인증, 특허 등), 테스트·시험분석 지원(서비스의 사업화, 검증·확산에 소요되는 비용) 등 사업화자금 지원

□ (지원기간) 선정협약 후 2022년 11월 30일까지

3

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

□ 신청자격

- 예비 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기업
- 모집공고일 현재 ‘세종지역’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(기업). 단,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지역제한에 예외사항을 두고, 참여기회를 제공함(관외 기업은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본사 이전, 지사 및 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약시 사업 참여 가능)

☞ 7년 이내 창업기업 : 2015년 6월 2일 이후 창업한 기업

- *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‘개업연월일’ 기준
- *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상 ‘회사성립연월일’ 기준
- *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신청하는 대표자는 제시된 ‘신청자격’에 해당하고, 대표자 전원이 ‘제외대상’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
□ 신청(지원) 제외 대상

☞ 기업이 부도인 경우

☞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
☞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
☞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(기업)

- ☞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- ☞ 정부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
- ☞ 기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기업

4

신청 · 접수

□ 신청기간

- 2022년 6월 2일(목) ~ 6월 14일(화), 18:00까지

□ 신청방법

- 온라인(이메일) 접수 : khj@ccei.kr
 - * 메일제목: 혁신기술실증지원사업 신청_기업명
 - 제출서류: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 제반서류 (신청서 양식 참조)
 - * 온라인(이메일) 접수 후 필히 유선으로 접수완료 확인(메일전송 오류 등 접수 누락 시 신청인 책임)

□ 문 의

- 특화사업팀 044-999-0004 * 접수 확인 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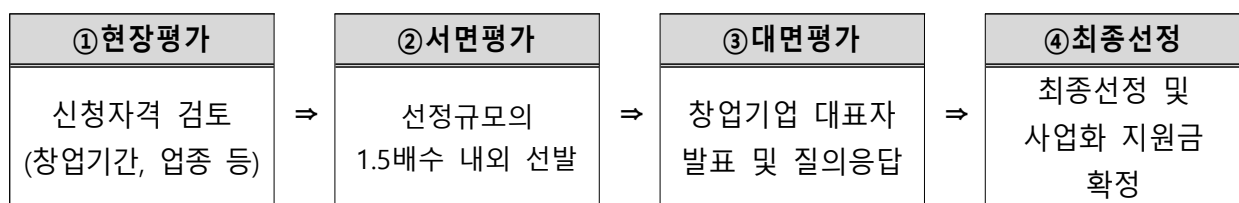
5

평가 및 선정

□ 평가 절차 및 기준

- (평가절차) 총 3단계 평가를 통해 최종선정

《 선정평가 절차 》



- (평가기준) 기술개발의 필요성, 아이템의 신뢰성, 사업화 실행역량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

- * 사업화자금은 추후 사업선정과정에서 사업비 지원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, 기업별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음
- * 선정평가를 통해 사업화자금 집행 계획 및 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불가 또는 변경요청 가능(추후 수정사업계획서 제출)

6

추진일정

※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

7

선정자의 의무

- 선정자는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정한 기한 내에 사업비를 집행하고,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제출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요청하는 자료제출, 점검 및 평가

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- 선정자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내에 따라 협약(설명회 등)체결, 수시 및 최종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간 기업을 유지하여야 함
 - * 협약기간 내 휴·폐업할 경우에도 사업 중단(사업비 회수) 등 제재조치 가능
-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3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8

유의사항

☐ 신청 시 유의사항

- 신청 및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참여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

☐ 평가 시 유의사항

- 발표평가 등 대상 창업기업은 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함

☐ 선정 후 유의사항

-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선정 취소,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, 사업비 신청서 접수 후 비목별 검토 후 지급됨
 - 또한, 중간(수시)점검 결과에 따라 ‘중단 또는 회수’될 수 있음
 - 사업비 지급조건의 증빙서류 미비 시, 지급불가로 처리될 수 있음